

◎ 환자중심연구사업단 공고 제2025-01호

2025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장

<연구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공익적 가치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함

○ 사업 범위

허가 후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중개연구 분류에서 T3 및 T4 구간에 해당

○ 사업 구조

세부사업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사업내용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세부과제 유형	▷ 전향연구(다기관·다학제 구성) -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특성에 따라 실용임상시험(PCT), 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가능	
	▷ 후향연구 -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2차 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	
	▷ DB 활용 후속연구 - 기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연계·결합하는 성과연구	
	▷ 가이드라인 연구(학회의 위임·참여, 다학제 구성) -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제·개정) 지원	

I. 공고 개요

1.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 ※ 상세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는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반드시 확인
- ※ 선정예정 과제 수, 지원기간,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단위(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선정예정 과제 수	과제구성 요건	지원 대상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25.04월 ~ '26.12.31. • 1차년도 9개월 이내 • 2차년도 12개월	9	주관 or 주관+공동	학·연·병
의료기술 비교평가 DB활용 후속연구	트랙1		12		
	트랙2		4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연구	100백만원 이내/년	'25.4월 ~ '26.03.31. • 1차년도 12개월	8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25.04월 ~ '26.12.31. • 1차년도 9개월 이내 • 2차년도 12개월	5	주관 or 주관+공동	학·연·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DB활용 후속연구	트랙1		9		
	트랙2		17		
의료기술 근거생성 가이드라인연구	100백만원 이내/년	'25.4월 ~ '26.03.31. • 1차년도 12개월	13		

2. 공고단위(RFP명)별 연구 지원기간

-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단위(RFP명)	연구기간	단계구분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 1차년도: 2025.04월 ~ 2025.12.31. • 2차년도: 2026.01.01. ~ 2026.12.31.	단계없음	
의료기술 비교평가 DB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연구	• 1차년도: 2025.04월 ~ 2026.03.31.	단계없음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 1차년도: 2025.04월 ~ 2025.12.31. • 2차년도: 2026.01.01. ~ 2026.12.31.		
의료기술 근거생성 DB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가이드라인연구	• 1차년도: 2025.04월 ~ 2026.03.31.		

3. 추진일정

- ('25.1월 초) 과제공모(30일 이상)
- ('25.2월 중) 선정평가 실시
- ('25.3월 중) 선정결과 전문위원회 검토 및 심의 후 결과 통보
- ('25.4월 초) 선정과제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II. 신청 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명권자가 발행한 「임용계약서류」 반드시 제출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정년)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자는 신청 제한 대상 아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3책에 포함)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가능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제안요청서(RFP)에 중복 지원불가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1건, 타 연구과제 공동연구책임자 1건 등 지원은 인정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2건 및 3책 5공 초과는 불가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동일 RFP에 지원한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과제구성 요건

연구과제 구성요건

- 제안요구서(RFP)을 참고하여 연구과제를 구성
- 과제구성

[주관(A대학 a교수)] 또는 [주관(A대학 a교수) + 공동(B대학 b교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과제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여부는 법인등록번호 기준)
-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과제 전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III.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 ▶ 2024년도부터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을 대신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 · 승인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

(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_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RIS 접수매뉴얼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① 연구자 사전 필수 이행사항

-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전환 동의 후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필수 이행사항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게시물 [붙임]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공고단위 (RFP명)	연구계획서 본문 양식	연구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첨부서류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DB 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연구	RFP별 서식 참조	50페이지 이내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중 <u>1. 연구개발의 필요성</u>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RFP별 내용 확인 후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DB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가이드라인 연구			

3. 제출기한

-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7:00:00) 염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 제출기한 내에 신청 완료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추가 접수 불가, 마감일 당일 신청이 몰려 접속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오류 발생이 우려 되므로 최소 2일 전에 신청 권장
-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DB 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연구		2025. 2. 5., 17:00까지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 연구자 신청완료 및 주관연구기관 인증완료
의료기술 근거생성 DB활용 후속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가이드라인 연구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

V. 기타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VI. 문의처

담당 내용	연락처
(연구개발1팀) 2025년 신규지원 계획, 제안요청서(RFP)	지희주 02-2174-2832
(연구개발2팀) PACEN 1단계 연구, PACEN 임상연구 리포지터리	이성숙 02-2174-2749
(과제평가팀) 연구책임자 및 지원기관 자격, 연구비 및 평가 문의	조은서 02-2174-2529 정주혜 02-2174-2757

※ 전산(IRIS) 신청 및 입력 방법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